



CDSS

WILL LIGHTBOURNE  
국장

캘리포니아 주-보건 사회 복지국

## 사회 복지부

744 P Street - Sacramento, CA 95814 - [www.cdss.ca.gov](http://www.cdss.ca.gov)



EDMUND G. BROWN JR.  
주지사

### 일선 직원/자원봉사자 비상식품 지원프로그램(TEFAP) 및 노인 식품 지원프로그램(CSFP)을 위한 시민 권리 교육 체크리스트

귀하가 내용을 읽고 이해한 각 중요 항목에 대문자로 서명해주세요.

#### 1절 - 모든 일선 직원/ 자원봉사자

시민 권리의 목표 - 치료 및 혜택 수혜의 공정함과 평등함

**차별의 종류**- 차별 치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치료함); 차별 적용 (중립적인

규칙을 집단에 따라 부적절하게 적용); 민원제기인 또는 그/그녀의 가족, 지인 및 시민 권리 행사, 민원 절차와 관련된 다른 이에 대한 보복/양갈음.

**예외**- 의회는 특정 집단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으며 수혜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의회는 연령 제한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령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이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 시민 권리가 적용되나요?** 연방 시민 권리 규정은 연방 재정 보조가 있는 모든 경우 적용됩니다. 연방 재정 보조를 받는 모든 것들에 대해 적용됩니다 - 현금만을 의지하지 않음. 이는 물품 훈련, 장비 및 기타 물품 및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제한**-CDSS 식품 보조 프로그램의 정책은 서비스의 수혜를 받는 고객의 모든 집단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CDSS는 수혜 고객 관리국(ERA)이 특정 집단의 구성원인 것에 관계 없이 원하는 모든 이에게 식품을 공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혜 고객 관리국이 직접 또는 하부 기관을 통해 특정 계급의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발견된다면 조사에 따라 프로그램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연방 보호 집단**- 연방법에 의거하여, 특정 집단의 사람들은 수혜 고객 관리국이 연방 재원을 이용하여 그들을 차별할 경우 USDA에 연방 차별 민원을 제기할 권리를 가집니다. 비상식품 지원프로그램(TEFAP) 및 노인 식품 지원프로그램(CSFP)의 목적을 규정하는 연방 법에 의거하여, 보호 집단은 인종, 피부색, 본적, 성별, 종교적 신념, 장애, 나이 및 정치적 신념에 따른 차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방 시민 권리 민원 제기**- 상기 언급한 집단을 기반으로 한 하나 이상의 차별로 민원을 제기할 분들은 USDA 프로그램 차별 민원 서식 (AD-8027)을 이용하시며, 이는 온라인으로 <http://www.ascr.usda.gov/complaint> 및 USDA 사무소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민원인은 또한 USDA의 주소로 우편을 보낼 수도 있으며 서식에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민원 서식의 사본을 요청하기 위해, 민원인은 (866) 632-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9992. 완성된 서식 또는 서신을 USDA에 다음의 주소로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미국 농업부  
시민 권리 차관보 사무실  
140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50-9410  
팩스: (202) 690-7442; 또는  
이메일: [program.intake@usda.gov](mailto:program.intake@usda.gov)

민원은 일반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FNS 현장 사무소의 직원이 조사합니다.

**비밀 보장**- 수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대해 얘기하거나 언급하지 않습니다. 의도가 수혜자가 다른 서비스나 보조를 받도록 도울 목적이라 할지라도 절대 다른 이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다른 부서나 프로그램의 수혜자의 대한 모든 정보요청은 관리자에게 보냅니다. 수혜자에게 그들의 정보 공유에 대한 서면 승인을 항상 받거나 그들을 대신하여 위탁합니다. 있었던 일들은 그대로 기록됩니다. 물론 예외 사항이 불법 혹은 부적절한 것이라면 주 혹은 연방사무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주 및 연방 심의에 협조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및 시민 권리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USDA 및 CDSS는 주기적인 준수 심의가 요구됩니다.

**수혜 고객 관리국은 행동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수혜 고객 관리국은 민원이서면이든 구두이든, 익명이든 관계없이 당국을 통해 접수된 모든 민원(프로그램, 판매인 또는 시민권리) 절차를 접수해야만 합니다. 자세한 민원사항은 **FNS 113-1** 문서의 XV 절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민원은 다음으로 송부해야만 합니다:

식품 및 영양 국 시민 권리 부서(CRD)  
3103 Park Center Drive, Suite 808  
Alexandria, VA 22302

**미 준수 당국에 대한 교정조치**- 수혜 고객 관리국 및 하부 기관이 연방 차별금지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주는 USDA의 지역 관리 사무소에 보고할 것이며 즉시 위반사항에 대해 자발적으로 교정할 것입니다. 수혜 고객 관리국 및 하부기관이 시민 권리 규정의 미 준수사항에 대한 교정이 되지 않을 경우 적용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비상식품 지원프로그램(TEFAP) 및 노인 식품 지원프로그램(CSFP)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장애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 부전으로 개인의 많은 삶의 활동(청각장애인이란, 듣거나 말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에 실질적인 제약을 형성합니다. 합리적인 조정은 장애인이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의 혜택을 동등하게 수혜 받을 수 있도록 변경/조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조정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일례로 장애인 주차장, 휠체어 통로 또는 이동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한 편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애인의 권리**- 미국 장애인법(ADA)은 장애인을 보호합니다. 듣거나 말하기가 어려운 청각장애인은 (800) 877- 8339의 연방 연결 서비스 또는 (800) 845-6136 (스페인어) 을 통해 USDA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 영어 구사자**-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거나 영어로 읽고, 말하고, 쓰거나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라고 합니다. 제한적 영어 구사자가 프로그램 정보 및 서비스에 실질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보조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통역이나 번역본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원치않거나 불쾌한 성적 행동에 연루되거나 용인하지  
마시며, 이는 성적 농담, 접촉 및 성 상납 요청 등을 포함합니다. 모든 위반 사항은 귀하의  
관리자, 주 또는 연방 직원에게 보고하십시오.

**갈등/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갈등이 있을 경우, 평정심을 유지하십시오. 귀하가  
위협을 느끼는 즉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즉각적인 해결 방안이 없을 경우 상황의  
해결을 위해 중재 또는 제 삼자의 도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정중하게 대하십시오. 기본 규칙을 준수하며 귀하가 받고 싶은  
태도로 사람을 대하십시오.

**시민 권리 준수 및 집행에 관한 부가정보는 FNS 지시113-1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시민 권리 교육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였습니다. 나는 상기 서술된 시민  
권리에 대한 지시를 준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  
정자 이름

\_\_\_\_\_  
Agency Name

\_\_\_\_\_  
Acct #

본 기관은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합니다.